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93 발의연월일: 2021. 8. 10.

발 의 자:한무경·양금희·태영호

정희용 • 권명호 • 이 용

하영제 · 김정재 · 서일준

김영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주소의 변경, 임원의 선임, 조합원의 변동 등에 대해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토록 법에 명시 되어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 인 등 여타 유사 법인에 비해 법정 보고사항이 과다한 실정으로 협동 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 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여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후보고토록 하여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82조, 제93조, 제13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제8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제9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제1항제1호 중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를 "총회 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임원"을 "이사장, 상근이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

- ②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설립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목적과 이용대상

- 2. 수익사업 시행 재원
- 3. 사업 기간
- 4. 수익금의 활용방법
-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5조(업무) ①조합은 설립 목적 | 제35조(업무) ① |
| 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 |
| 있다. |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 | 12.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수 |
| 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 | <u>익사업</u> |
| 의 승인을 받은 사업 | |
| 13. ~ 15. (생 략) | 13. ~ 15.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82조(업무) ①사업조합은 다음 | 제82조(업무) ① |
|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 |
| 를 할 수 있다. | <u>.</u>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9.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 | 9.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수익 |
| 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 | <u>사업</u> |
| 의 승인을 받은 사업 | |
| 10. ~ 12. (생 략) | 10. ~ 12.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93조(업무) ①연합회는 다음 각 | 제93조(업무) ① |
|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 | |
| 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 | |

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 1. ~ 12. (생략)
- 13.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 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 의 승인을 받은 사업

14. ~ 16. (생략)

② ~ ④ (생 략)

-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조합, 사 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주 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
 - 1.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 2. 주소의 변경
 - 3. 임원의 선임
 - 4. (생략)
 - 5. 삭 제
 - 6.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신 설>

| . |
|---------------------|
| 1. ~ 12. (현행과 같음) |
| 13.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수 |
| <u>익사업</u> |
| |
| 14. ~ 16. (현행과 같음)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 |
| |
| |
| |
| |
| 1. <u>총회 결과</u> |
| <삭 제> |

- 2. 이사장, 상근이사----
- 3. (현행 제4호와 같음)
- <삭 제>
- <삭 제>
- ②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설립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 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를 하여 야 한다.

| | 1. 사업의 목적과 이용대상 |
|---------------------------|----------------------|
| | 2. 수익사업 시행 재원 |
| | <u>3. 사업 기간</u> |
| | 4. 수익금의 활용방법_ |
| |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 |
| | 로 정하는 사항 |
| <u>②</u> ~ <u>④</u> (생 략) | ③ ~ ⑤ (현행 ② ~ ④와 같음) |